



CIRCULAR

36 Myeongji ocean city 9-ro,
Gangseo-gu, Busan, 618-814
Republic of Korea

Phone :+82-70-8799-8501
Fax : +82-70-8799-8419
E-mail : jsupark@krs.co.kr
Person in charge : Park Jae-sung

To : 전 검사원 및 관련업체

No : 2019-11-E

Date : 2019.12.20

제 목(Subject)	9.129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(적용지침 1편)
적 용(Application)	2020년 1월 1일 (검사신청일 기준)

1. 2019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1편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- 1) 25년 이상의 용도변경된 VLOC의 검사요건 강화
2. 아울러, 이 내용은 2020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0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1편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첨부: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1편 개정사항 ----- 1부.(끝)

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

(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)

2019.12



- 주 요 개 정 내 용 -

(1) 2020.01.01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
- 선령 25년 이상의 용도 변경된(CONVERTED) VLOC의 손상보고가 꾸준히 증가, 동 선박들에 대한 안전 향상을 위해 검사강화방안이 필요

(1) 2020.01.01일자 시행사항
(검사신청일 기준)

현행	개정사항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4 절 <생략> 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</p> <p>502. 단기선급증서 【규칙 참조】 <u>규칙 502.의 2항에서 “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”라 함은 규칙 901.의 5항 및 7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. <새롭게 추가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5 절 <생략> 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</p> <p>601. 일반 【규칙 참조】 규칙 601.의 1항 (2)호에서 “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지침 1장 801.의 5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602. 연차검사 【규칙 참조】 1. 규칙 602.의 3항 (7)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검사원은 밀폐성시험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침 1장 801.의 1항의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. 【규칙 참조】 2. ~ 5. <생략> <u><새롭게 추가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4 절 <생략> 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</p> <p>502. 단기선급증서 【규칙 참조】 1. <u>규칙 502.의 2항에서 “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”라 함은 규칙 901.의 5항 및 7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. (2020)</u> 2. <u>규칙 502. 이외에도 우리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단기선급 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2020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5 절 <생략> 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</p> <p>601. 일반 <생략></p> <p>602. 연차검사 【규칙 참조】 1. <u>규칙 602.의 3항 (7)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검사원은 밀폐성시험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침 1장 801.의 1항의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. 【규칙 참조】</u> 2.~5. <현행과 동일> 3. <u>규칙 602.의 연차검사 요건에 추가하여, 초대형 원유운반선에서 광석운반선으로 용도 변경된 선박 중 선령이 25년 이상인 경우 다음의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. (2020)</u> (1) <u>현상검사</u> (가) <u>모든 화물창 하부의 이중저 구역</u> (나) <u>화물창과 면한 모든 윈 구역 (평형수 탱크 및 보이드 스페이스 포함)</u> (2) <u>정밀검사</u> (가) <u>화물창과 면한 모든 윈 구역 중 평형수 탱크</u> (나) <u>화물창과 면한 모든 윈 구역 중 보이드스페이스의 경우, 현상검사시 “주요 구조부재”¹⁾에 손상 식별시 다음에 대한 정밀검사</u> a) <u>손상이 식별된 구역의 모든 구조부재</u> b) <u>손상이 식별된 구역의 대칭구역은 유사한 구조</u></p>

